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16(금)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0(화)
- 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7.2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,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가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보상 받은 소유자가 보상비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용 도모.

- 다.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함.
- 라.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㎡이하인 기존공장 부지내에서 증·개축을 허용하고, 부지면적이 1만㎡이상인 지를 판단함에 있어 폭 8m미만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.
- 마. 관리지역안에서 농업·임업·수산업·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함.
- 나.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화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(2004.1.20)과 평창군도시계획조례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, 관리지역등의 행위규제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함께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
 - 따라서,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을 보면
 - 자연녹지 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
 - 관리지역은 공장의 증·개축·기타 창고시설·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○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·경제여건·인구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
개정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가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